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25호 2020. 4. 17. (금)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71호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조 례

제261회 정선군의회(2020. 04. 07.)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4.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1호

###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난 발생 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③ 재난기본소득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등 국가적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군민 생활의 위협과 지역 경기 침체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음.
- 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정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제1조, 제2조)
- 나.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제4조)
- 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 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함 (제6조)